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추가 도비지원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지역의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을 당하고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도비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17.07.16 집중호우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추가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은 진천, 증평, 보은은 일부 읍·면지역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난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침수, 화물자동차 침수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며, 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가장 기본적인 사무는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임을 감안할 때 법·제도의 미비한 점을 자치법규에서 보완하여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은 보장함은 물론 최소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은 지방비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국비나 지방비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제도적 범주에 속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음.
-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의 기본적인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추가 도비지원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지역의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최소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